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22-1324호

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2년 10월 일
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○ 상위법령인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 하고,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.

2. 주요 내용

-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1조, 제4조, 제10조)
- O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신설(안 제5조)
- O 중복된 문장 수정(안 제6조)
- O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의 점검의무 추가 및 조정(안 제10조 2호, 3호, 4호)
- O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 사항 추가(안 제14조)

3. 의견 제출

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<u>2022년 10월 13일(목)</u>부터 <u>2022년 11월 02일(수)</u>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A4 용지를 세워서 작성)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(참조 : 청소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,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(전화 : 2094-1984, FAX : 490-4428, Email: jkm0316@jn.go.kr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 및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조례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/중랑소개/중랑소식/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(http://www.jungnang.go.kr/)